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51 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 박성준·노종면·정을호

윤종군 • 한민수 • 박 정

신영대 • 이인영 • 이정헌

전현희 • 민병덕 • 박희승

허 영·문진석·박홍근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, 법인 아닌 단체는 발급받은 고유 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.

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명칭이 혼 동되고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이 있음. 이를 이용하여 최근 개인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 해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음.

이에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3조제1항 후 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거래자는 실명에 각각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금융실명거래) ① 금융회사	제3조(금융실명거래) ①
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(이하	
"실명"이라 한다)로 금융거래를	
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<u>이 경우 법인</u>
	또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
	는 거래자는 실명에 각각 법인
	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
	하여야 한다.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